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성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1095

발의연월일: 2021. 6. 25.

발 의 자: 김성원 · 이양수 · 김용판

이종배 · 김정재 · 성일종

박덕흠 • 이주환 • 이 용

서일준 • 박대수 의원

(11일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군인이나 경찰·소방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 련 중 사망한 사람 또는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과 유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합당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「특수임무유 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송시설 및 고궁 등의 이용 지원, 주택의 우선 공급 등에 관한 지원 규정이 없어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.

또한, 현행법에 따르면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는 보훈병원에서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나, 보훈병원이 아닌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75세 이상인 재해사망군경의 배우자 또는 사망한 재해부상군경의 배우자로 제한하고 있는 바, 그 대상을 보훈보상대상자의 종류나 나이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

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보훈보상대상자 등에게 수송시설 및 고궁 등을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하도록 하고,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,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에 대한 의료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51조 및 제54조의2부터 제54조의4까지 신설).

법률 제 호
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1조제5항 전단 중 "보훈병원"을 "보훈병원 또는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(이하 "위탁의료기관"이라 한다)"으로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"보훈병원"을 "보훈병원 또는 위탁의료기관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7항 중 "제6항"을 "제5항"으로 한다.

제5장에 제54조의2부터 제5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4조의2(수송시설의 이용지원) ① 재해부상군경, 재해부상공무원 및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재해부상군경과 재해부상 공무원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 요금을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. ② 국가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

제54조의3(고궁 등의 이용지원) 보훈보상대상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에 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

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.

제54조의4(주택의 우선 공급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「주택도시기금법」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·공급되는 주택을 무주택기간,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공급할 수 있다.

- 1. 보훈보상대상자
- 2.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 중 제56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
- ② 「주택법」제54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건설·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그 민영주택건설·공급량의 일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.
-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 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주택공급의 신청절차,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의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혂 행 개 정 아 제51조(진료) ① ~ ④ (생 략) 제51조(진료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는 보훈병원에서 진료한다. 이 경 우 그 진료 비용은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(減 원 또는 국가보훈처장이 지정 免)하며, 그 감면된 비용은 국 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 가보훈처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(이하 "위탁의료기관"이라 한 해당 보훈병원에 지급할 수 있 다)-----다. -----보훈병원 또 는 위탁의료기관-----⑥ 75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<삭 제>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은 보훈병원 외에 국가보훈 처장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 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. 이 경우 그 진료 비용 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

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,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.

- 1. 제11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보상금을 받는 재해사망군경의 배우자
- 2. 제11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어 보상금을 받는 사망한 재해부상군경의 배우자
- ⑦ 제1항부터 <u>제6항</u>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료 또는 진료비지원의 방법·절차·범위 및 상한 등 의료지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<신 설>

⑦ <u>제5항</u>	_
	_
	_
	_

제54조의2(수송시설의 이용지원)
① 재해부상군경, 재해부상공무원 및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재해부상군경과 재해부상공무원을 직접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, 지방자치단체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 요금을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.

<신 설>

<신 설>

② 국가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54조의3(고궁 등의 이용지원) 보훈보상대상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이용료를 받지 아니 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.

제54조의4(주택의 우선 공급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국가나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「주택도시기금법」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입 기원을 받아 건설·공급되는 주택을 무주택기간,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공급할 수 있다.

1. 보훈보상대상자

2.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 중 제56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 ② 「주택법」 제54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건설 · 공급하는 사 업주체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그 민영주택 건설 · 공급량의 일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.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주택공급의 신청 절차,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 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 을 준용한다.